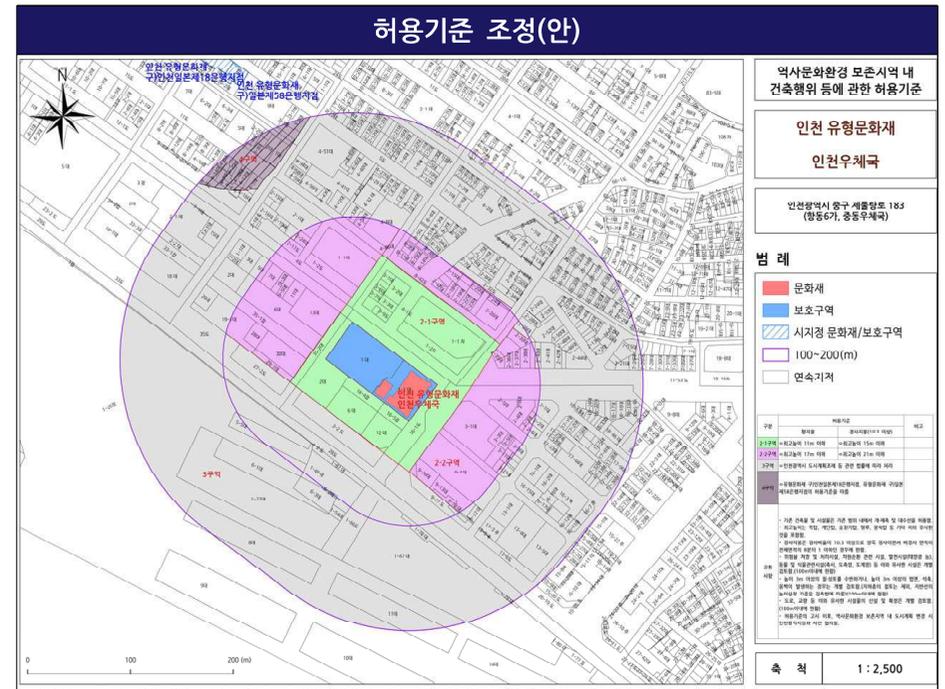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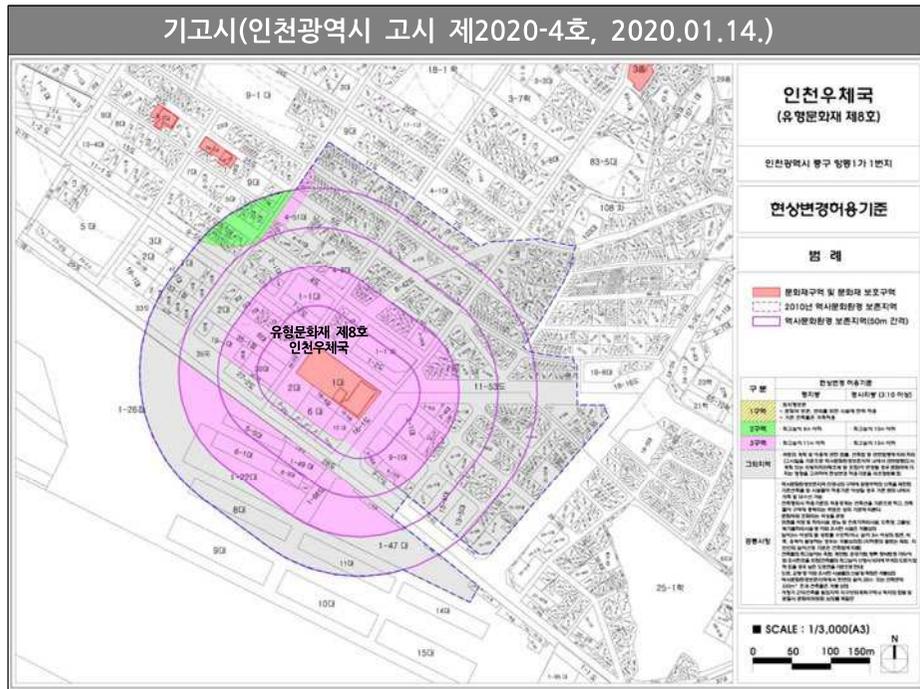


[붙임 1]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1. 중구

■ 인천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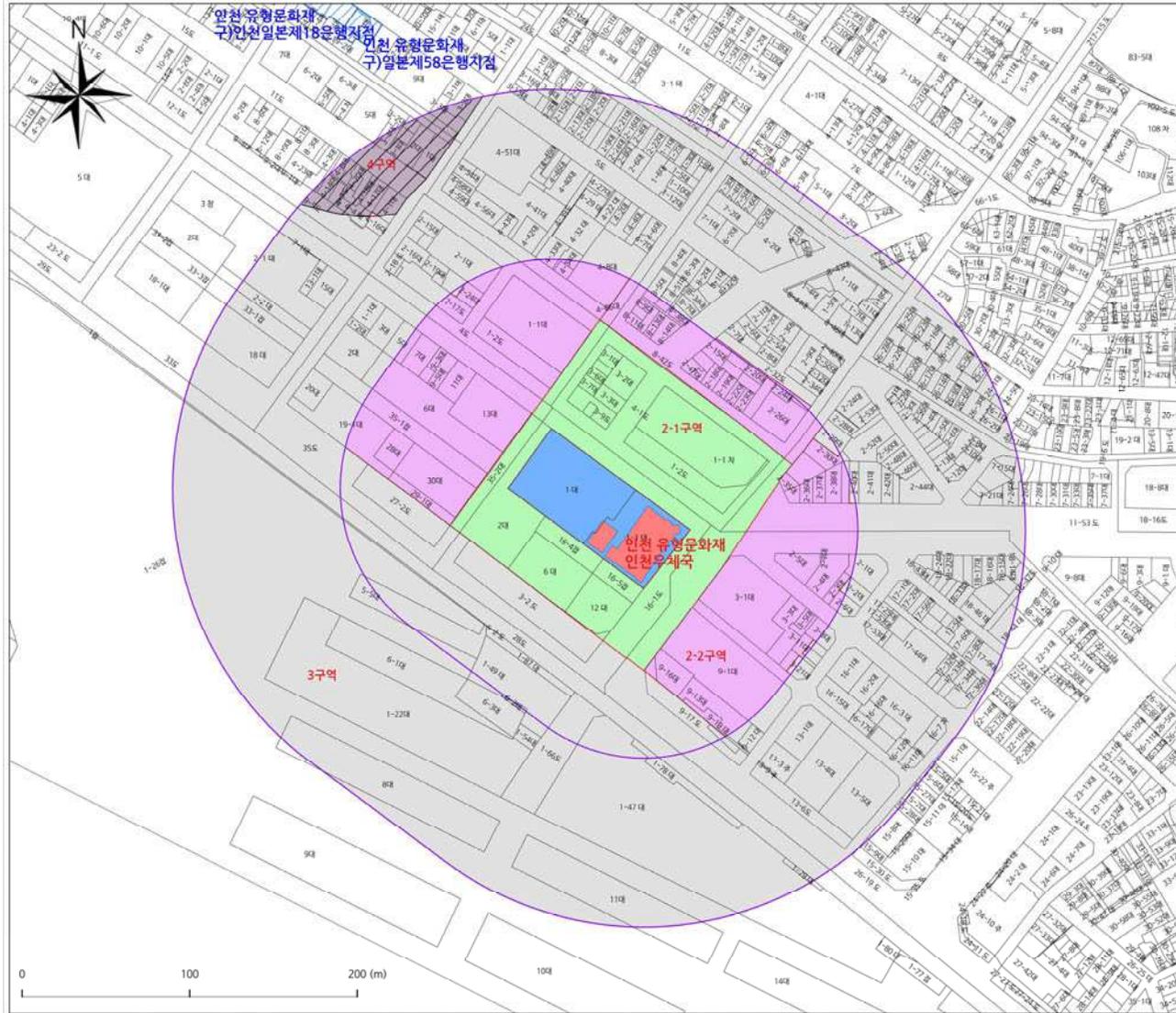


기고시(2020.01.14.)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 보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그외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변경내의 구역에 공동주택의 신축을 제한함.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을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포함.(건축물의 최고높이 산정시 대지에 두개의 도로가 접해 있을 경우 낮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다)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한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의 합필 및 분할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허용기준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유형문화재 구)인천일본제18은행지점, 유형문화재 구)일본제58은행지점의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 유형문화재
인천우체국

인천광역시 중구 제일로 183
(항동6가, 중동우체국)

범례

- 문화재
- 보호구역
- 시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100~200(m)
- 연속지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방치물	경사지붕(10:3 이상)	
2-1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2-2구역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규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유형문화재 구인양본제 18은행지점, 유형문화재 구양본 제58은행지점의 허용기준을 따름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영구, 풍차탑 등 1차 이상 유시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에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팔물 저장 및 차저시방, 지반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굴 및 석굴관광시설(속사, 도축장, 도제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해충의 결치는 제외, 지반산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청과 사전 협의함.

축척 1:2,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제물포구락부-기고시(2015.11.30.)			구)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외 3개소-기고시(2015.11.30.)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5m 이하 (단, 담장 및 석축은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7.5m 이하 (단, 담장 및 석축은 보존)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5m 이하 (단, 담장 및 석축은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7.5m 이하 (단, 담장 및 석축은 보존)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3m 이하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반경 내의 구역에 공동주택의 신축을 제한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을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건축물의 최고 높이 산정시 대지에 두개의 도로가 접해 있을 경우 낮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다)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구역 내 획지의 합필 및 분할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반경내의 구역에 공동주택의 신축을 제한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을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건축물의 최고 높이 산정시 대지에 두개의 도로가 접해 있을 경우 낮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다)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 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구역 내 획지의 합필 및 분할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허용기준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2 구역	2-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문화재 인천우체국, 유형문화재 흥예문의 허용기준을 따름.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 유형문화재 구)제물포구락부
 인천 유형문화재 구)인천일본제1은행지점
 인천 유형문화재 구)인천일본제18은행지점
 인천 유형문화재 구)일본제58은행지점
 인천 기념물 칠 일조계지 경계계단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89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77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69-1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1가 24 및 1필지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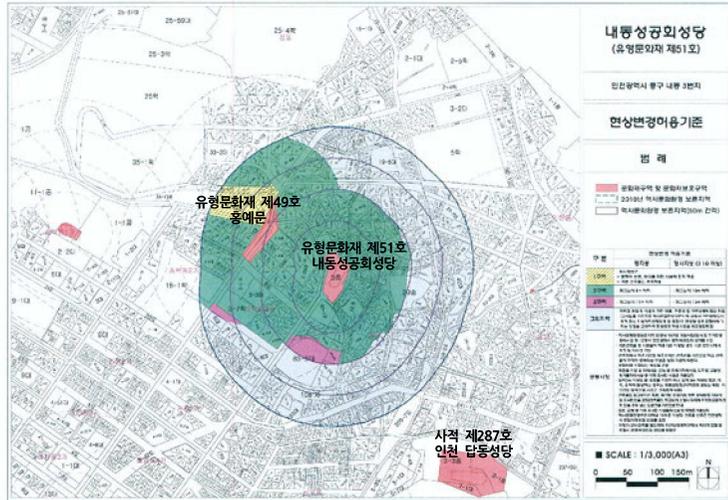
- 문화재
- 보호구역
- 시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100~200(m)
- 연속지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행시범	경사지범(10:3 역상)	
1구역	→개발금지		
2-1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규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유형문화재 인천유적구, 유형문화재 종해문은 허용기준을 적용.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준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계탑, 방풍, 장식탑 등 기타 대량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범은 경사비율에 10:3 역상으로 양쪽 경사면에서 비강사 면적에 전체면적의 50%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을 지양 및 처리하고, 지반은 관련 시법, 평면시법(태양광 등), 풍동 및 시공(시공)기준, 3축선, 5개도 등 이와 유사한 사항은 개별 규정(100m이하)에 준함.		
	→높이 3m 이상의 풍성벽을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벽면, 석축, 물방이 형성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필(재하중의 검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상행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하)에 준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필. (100m이하)에 준함.			
→이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연립공사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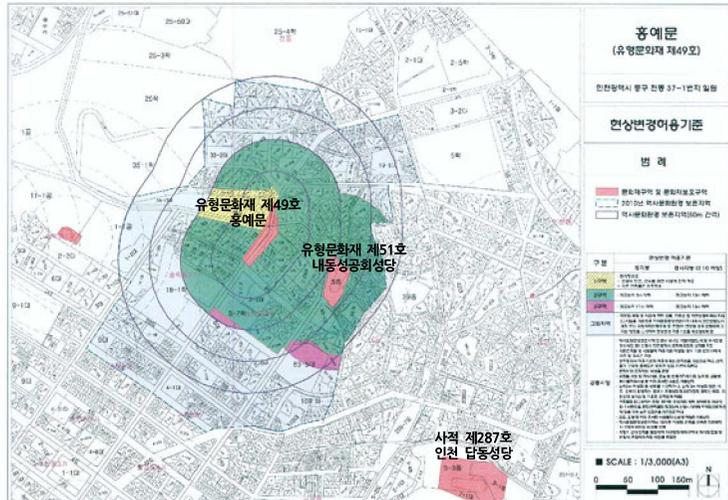
축 척 **1 : 4,000**

■ 내동 성공회성당, 흥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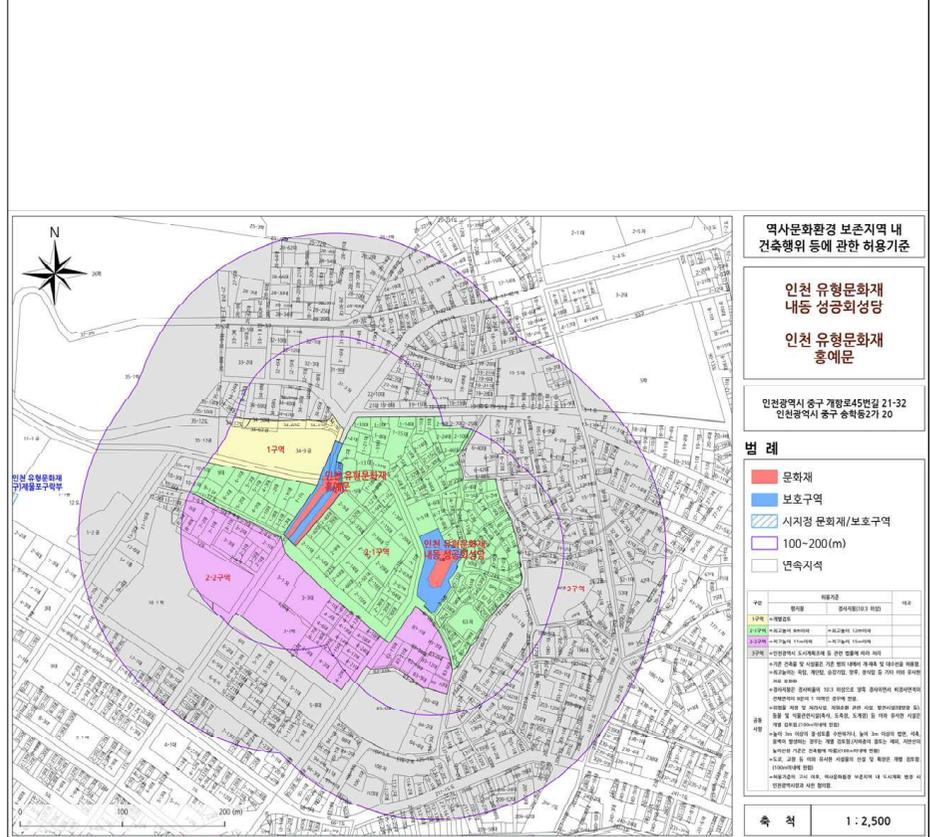
내동성공회성당-기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10호, 2015.11.30.)



흥예문-기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10호, 2015.11.30.)



허용기준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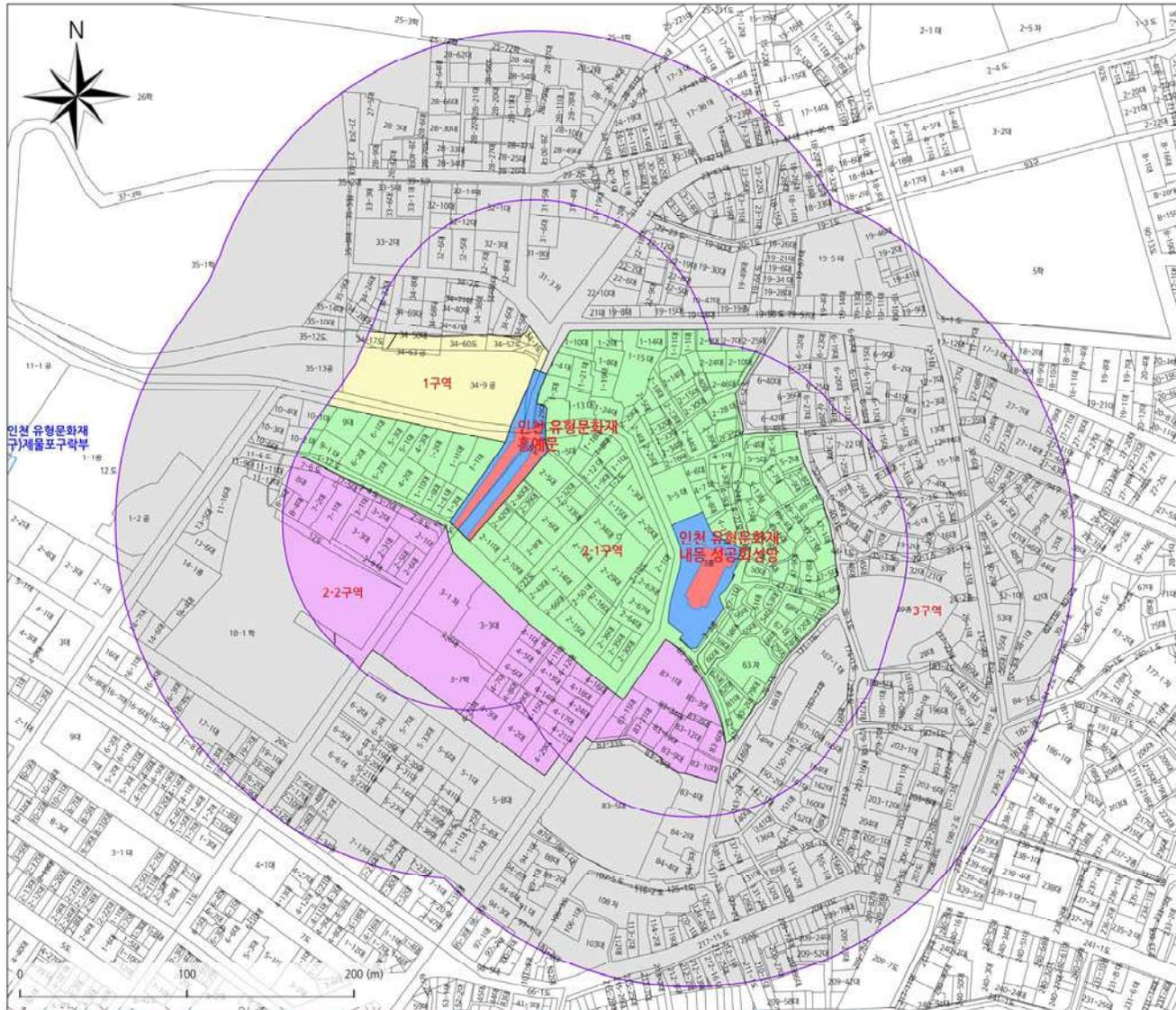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내동성공회성당-기고시(2015.11.30.)			홍예문-기고시(2015.11.30.)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8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0m 이하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8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1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3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1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3m 이하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그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내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을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건축물의 최고높이 산정시 대지에 두개의 도로가 접해 있을 경우 낮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다)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구역 내 획지의 합필 및 분할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내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을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건축물의 최고높이 산정시 대지에 두개의 도로가 접해 있을 경우 낮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다)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구역 내 획지의 합필 및 분할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허용기준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2구역	2-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 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 유형문화재
내동 성공회성당

인천 유형문화재
홍예문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45번길 21-32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2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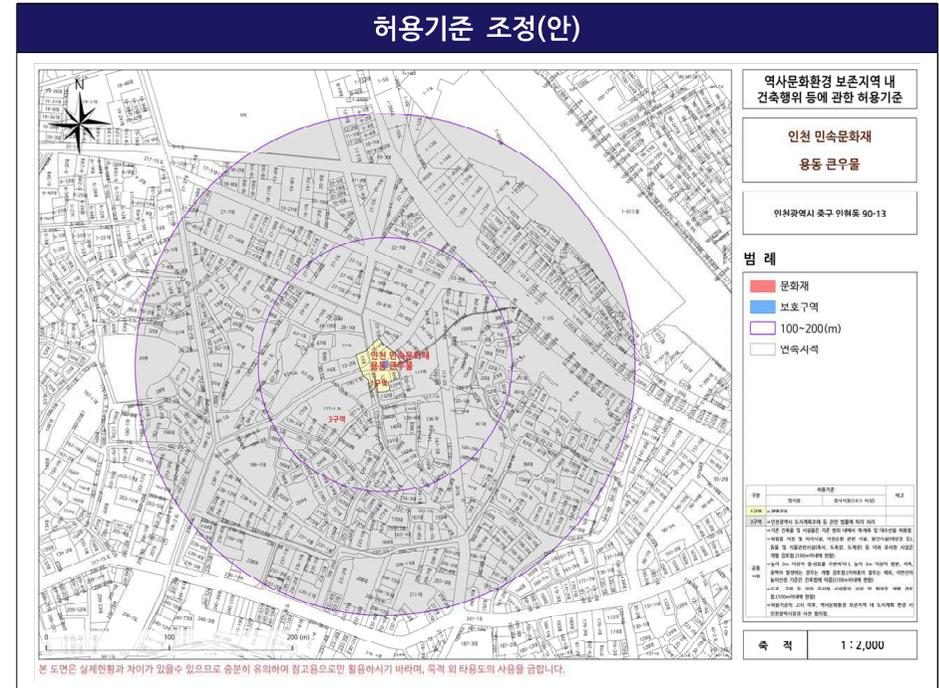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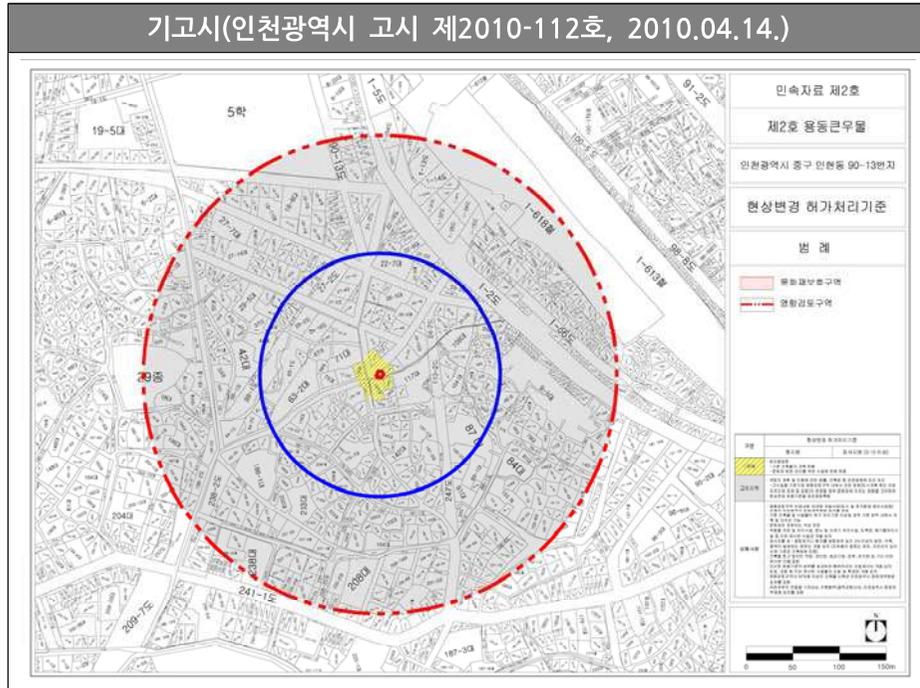
범 례

- 문화재
- 보호구역
- 시지경 문화재/보호구역
- 100~200(m)
- 연속지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행시범	경사시범(10:3 이상)	
1구역	개발검토		
2-1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2-2구역	최고높이 11m이하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행위 내에서 재건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실, 승강기실, 창주,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시범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에서 비경사면적의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차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찰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발 검토됨.(1000㎡이하 한함) 높이 3m 이상의 철-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돌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발 검토됨.(24㎡이하의 절토는 제외, 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0㎡이하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도 개발 검토됨.(1000㎡이하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청과 사전 협의함.		

축 척 1 : 2,500

■ 용동 큰우물



기고시(2010.04.14.)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기존 건축물의 개축허용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반경내에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영향검토구역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지하수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축행위(굴착포함)시는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허용기준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